

영등포구의회
제20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0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제3항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제4항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,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
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추가(안 제11조제2호, 안 제11조제5호 신설)

(당 초) 4개 기능 ➡ (변 경) 6개 기능

-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(안 제11조제2호)

-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(안 제11조제5호)

라.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제1항)

- 당연직위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

마. 조직개편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개수 삭제(안 제15조제2항 및 제7항)

-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 구성사항을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수정
- 제7항의 “위원회의 규정”을 “위원회의 결정”으로 수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10조제3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(17개구에서 기 시행중임),
 - 안 제10조제4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,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(12개구에서 기 시행중임),

- 안 제11조제2호 및 안 제11조제5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4개 기능 외 주민제안사업 의제 발굴 및 검토와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의 2개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,
 -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삭제에 따라 그 임기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으며,
 - 또한, 안 제15조제2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, 분과위원회 개수를 6개 이내의 분과구성 사항을,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개정하였으며,
 - 안 제15조제7항에서 “그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”를 그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, 위원회의 결정으로, 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,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3.>

2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)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-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